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The Local Government Analysi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부 교수 강기정\*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조 교수 변미희\*\*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

*Associate Professor:* Kang, ki jung

Dept. of Christian Welfare. Bea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Byun, mi 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or this study, researchers first compared Canada, Australia and Japan and, second, analyzed the foreign policy plan data in Ko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yunggi province had many plans for foreign laborers and Gangwon, Kyungbuk and Jeonnam provinces had many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Second, many local governments had few economic independence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except Gangwon and Kyungbuk provinces. Third, many local governments had no school or study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xcept Gangwon, Kyungbuk and Chungnam provinces. Fourth, Canada and Australia had many sources of public information and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eople to gain understanding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d few of these programs. Finally, Canada and Australia

\* 주저자: 강기정 (kkj@bu.ac.kr)

\*\* 교신저자: 변미희 (bmh@bu.ac.kr)

had many international programs for immigrants to maintenance their culture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ne of these programs.

Key Words : 다문화 가족정책(muticultural family policy), 다문화주의(muticulturalism),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100만 명의 소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5만 5천 654명에 이르렀고, 결혼이민자는 12만 6천 155명으로 남자가 1만 5천 323명(12.1%), 여자가 11만 832명(87.9%)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의 흐름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민주주의의 확립,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한 소수 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 등에 의한다(김비환, 2007). 우리나라도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농촌지역의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이주가 증가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 이주 형태로 국제적인 흐름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남성 중심 업종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선주 외, 2009).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족의 대부분은 문화의 차이,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강기정·정천석, 2009). 특히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결혼은 다문화 가족의 적용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들을 발생하고 있다(08.2.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 켄탄란 투신, 09.2. 캄보디아 여성 폭력남편 우발적 살해, 10.7. 정신질환 남편에게 살해된 탁티항옥). 다문화 가족의 부부 폭력은 47.7%로 한국인 가정 40.3%보다 높은 편이며, 폭력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한국인 가정보다 높은 수준이며(장명선, 2009), 다문화 가족의 이혼건수가 11,697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6)』, 『다문화가족지원법('08.9)』, 『외국인주민지원 조례('09.206개)』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08.11 보건복지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08.10 교과부)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09.12)」를 구성하여 추진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0년 현재 총 171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부처별 분야별 지원 대책을 통합 체계화하여 지원 정책을 재정비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0-2012년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다(‘10.5.7). 즉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정책이 지방정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정책은 도입 초기이므로, 타 지역의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과 향후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차별적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서재호,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욕구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다문화 가족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는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유형화하는 이해경(2007, 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관련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언어문제, 심리부적응, 문화차이, 가족갈등, 빈곤 문제 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등 한국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

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자활모델로서의 창업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강기정·변미희).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가?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이 사회적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통합정책의 기본전제이다. 각 나라별로 이주민을 수용한 배경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integration)’ 개념을 정의하거나 통합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통합정책의 접근 방식은 이주민을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 위치 지우기보다는 유입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관리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내국인 모두 서로 존중하고 적응하는, 쌍방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이선주 외, 2009).

우리 사회에서도 통합의 대상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하되, 어떠한 다문화 가족정책의 통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 1998)는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을 이주민 수용방법, 국적 부여의 원칙,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토대로 다문화주의의 유형(Multicultural Model), 다문화주의의<sup>1)</sup>와 유사한 문화다원주의 유형, 동화주의 유형(Assimilationist Model), 차별배제 유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설동훈, 2000; 조옥라 외 2006; 한건수, 2006; 최명민 외, 2009). 본고에서는 문화다원주의의 경우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므로, 다문화주의 유형, 동화주의 유형, 차별배제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을 수용한 예를 통해 통합정책의 형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의 유형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즉 이 유형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유입, 국내에 공존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회 통합을 유지해 나가려는 정책을 펼친다. 다문화주의 유형으로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의 국가가 있다(조옥라 외, 2006). 두 번째로 동화주의 유형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포함된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입국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민자를 일반적으로 자국의 문화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동화를 기반으로 국적 취득을 허용하거나 국민의 자격을 얻게 하는 정책 유형이다. 동화의 유형은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적이고 악명 높은 동화정책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변화된 모습의 동화정책 유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 번째로 차별배제 유형의 국가에는 독일, 벨기에, 중동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 유형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노동시장의 일부 영역(예를 들어 3D 업종)에만 개방하는 정책으로서, 임시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국적 획득, 참정권 불허, 복지 혜택 배제 등과 같이 사회정치 영역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유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의 정책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독일의 임시 이주노동자 제도와 2006년까지 유지되었던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일본의 산업연수생 및 인턴제도 등이 유사하다. 차별배제유형의 정책 하에서는 사회 내 모든 영역과 제도가 일관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최명민 외, 2009).

## 2.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

1)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시행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회 내의 모든 인종,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유정석, 2003; 강휘원, 2006). 아울러 여러 인종,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목적을 갖는다(Goldberg, 1994; Willet, 1998)

화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하여, 역시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에 제시하였는데,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 초반에 다문화주의를 공식 채택하였고, 일본의 경우 2005년에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수립하였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등 2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고, 호주는 200개 언어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는 세 국가 모두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다문화 정책 및 전달체계의 국가 간 비교  
먼저 다문화 정책의 국가 간 비교는 <표 1>

<표 1> 다문화 정책 및 전달체계의 국가 간 비교

분류	캐나다	호주	일본	
법·정책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식 채택</li> <li>1988년 The Canadian Multicultural Ac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3년경 다문화주의 채택 Anti-discrimination Laws (동화⇒통합⇒다문화주의로 발전 1901~1940년 백호주의정책 White Australia Policy, 1950~1970년 백인간의 문화적 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5년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li> </ul>	
주요 정책	기본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종과 종족, 종교, 언어와 관계없는 포괄적인 시민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적 의무, 상호존중, 상호공평성공동이익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건설을 목표로 함</li> </ul>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개 언어가 공존함</li> </ul>	일본어
주요 서비스 기관	중앙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nadian Heritage 사무소 5개, 서비스센터 23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MIA(Department of Immigration Multicultural and Aboriginal Affai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 복지보건처, 노동부, 히로섬국제센터</li> </ul>
	지방 행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정부 및 시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시군구</li> </ul>
	서비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GO, 지역 소수인종 공동체, 종교단체, 학교, 국제기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센터, 공민관</li> </ul>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06),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여성포럼(2007), 최명민 외(2009)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2〉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

분류	캐나다	호주	일본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인종주의 행동계획</li> <li>유엔 인정차별 철폐의 날 (3월 21일): 청소년 중심으로 인종주의 고발과 홍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armony Day’(3월 21일 국가적 화합하는 날로 소수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공역·강연 등 행사 참여)</li> <li>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방송은 60개의 언어로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방송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서포터 1000명 육성사업 (오오사카부 2005~7년까지)</li> </ul>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8세 창작 작문 및 미술 대회를 통해 다문화주의를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교육 프로그램인 초·중·고등학교는 you+me=us(australia)를 강조함. 즉 인종주의 및 적대, 편견을 일소하고 소수 문화공 동체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문화나 사회에 대한 지식을 교육</li> </ul>
국제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주의를 전 세계에 알림</li> </ul>	-	-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문화 유산의 달(영화 상영, 연극과 춤, 콘서트, 전시회, 요리강좌, 어학학습, 시낭송 등)</li> <li>흑인 역사의 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교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li> <li>공공 박물관 및 도서관에 다문화권의 도서 및 문화관련 자료, 물품을 제공함</li> </ul>	-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교육프로그램</li> <li>이민자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li> <li>The Host Program(기존의 가정을 연결하여 이민자의 적응을 도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이주민: 최대 510시간의 영어교육 제공</li> <li>성인영어교육: 지역커뮤니티 센터 및 개별직장을 통해 부가적 재정지원</li> <li>이민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교육비로 매년 3만 호주달러 지원</li> <li>다국어 통번역 서비스 (100여 개국 언어 통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종합 상담창구 설치</li> <li>다언어를 통한 정보제공 실시 (구급의료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정보네트워크 구축- 외국어의료기관 정보제공 등)</li> <li>외국인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 소득 향상)</li> <li>유학생 지원(일본어와 일본문 화연수 실시)</li> <li>외국적 현민에 대한 사회환경 정비 (외국인학교지원, 중국 귀 국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학습지원)</li> </ul>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06),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여성포럼 (2007), 최명민 외(2009)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 2)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를 살펴 보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캐나다, 호주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이 4개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세 개 국가 모두 유사하게 언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도출 과정을 체계화하는 기법이다. 즉 내용분석은 신문기사나 인쇄물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물이나 개인과 집단 면접자료 등을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양적 자료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대상 문헌은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외국인 정책위원회, 2009)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분석대상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포괄적·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욕구가 다르므로,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는 제외하고,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자료의 분류와 동일하게 네 개 범주를 다시 3~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다시 2~3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하였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서비스를 고찰하였는데, 이 세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내용 분석한 결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된 5개를 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분석틀을 작성하고, 분석틀에 따라 내용분석 후에 가정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각 전공 교수 1명의 총 3명의 전문가에게 분석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자료의 분류와 동일하게 네 개 범주를 다시 3~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다시 2~3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하였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사업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며,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정책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총 14개 서비스로 가장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각 5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경기도,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외국인 체류지원강화와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개선 등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에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예시한 사업인 한국어 교실,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여가환경 개선, 다문화 도서관 운영 등과 경기도 자체사업인 통역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녀 보육지원, 24시간 외국인 주민 진료 시스템 운영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사업 비교

분 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우수 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1	-	-	-	-	-	-	-	-
	국가차원의 우수 인재 유치지원	-	-	-	-	-	-	-	-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	지역별,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	-	1	-	-	-	-	-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	2	1	2	-	-	1	-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외국인 체류지원강화	-	3	-	-	2	-	-	-	1 (자)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개선	4	5	1	1	3	-	1	1	-
			4 (자*)		1 (자)				1 (자)	
합 계	5	10 4 (자)	2	3 1 (자)	5	-	2	1 1 (자)	1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 비교

분 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4	4	2	3 1 (자*)	3	2	-	1 1 (자)	1 (자)
	참여 및 소통강화	12	2	4	7	7	1	4	1	3 (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26	5	5	18 4 (자)	14 6 (자)	1 1 (자)	8	5 1 (자)	3 2 (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12	2	3	7	4		1	-	1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1	2	-	2	2	1	3	-	1 (자)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학습 및 학교 생활 지원	1	1	-	7	-	-	-	2	-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	-	-	-	-	-	-	1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동포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	-	-	-	-	-	-	-	-	-
	국내 체류 동포 처우개선	-	-	-	-	-	-	-	-	-
합 계		56	16	14	44	30	5	16	10	5
					5 (자)	6 (자)	1 (자)		2 (자)	7 (자)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은 이 분야에 2개 이하의 복지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질 높은 사회 통합’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결혼이민

자와 다문화가족을 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이 분야에 다른 사업들 보다 훨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4개 하위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경제적 자립지원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영역에 가장 많은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참여 및 소통강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사업’ 역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

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를 위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의 경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의 경우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관심의 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부처별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단 하나의 복지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하위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질 높은 사회 통합’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가장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56개, 경상북도 49개, 전라남도 36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충청북도는 16개 이하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수로 각 정책 사업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지역 특성에 고려한 욕구 조사와 사업 단위별로 지역 특성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사업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복지사업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사업과 행정시스템을 2개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이 분야에 1개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사업은 합법 체류 외국인 지원과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다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사업 비교

분 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	-	-	-	-	1	-	-
	외국인 집단 거주지 관리 강화	-	-	-	-	-	-	-	-	1
	합법 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	-	-	2 (자*)	-	-	-	-	-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 관리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	-	-	-	-	-	1	-	-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	1	-	-	-	-	-	-	-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	국적 업무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	-	-	-	-	-	-	-	-	-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	-	-	-	-	-	-	-	-
합 계		-	1	-	2 (자)	-	-	2	-	1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식적인 전달체계와 NGO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와 지원범위 등에 갈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효율적인 외국인 정보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국적업무를 위해서는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관련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과 행정체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권 옹호’ 사업 비교

다음 <표 6>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권 옹호’를 위한 사업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인권 옹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4개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게다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소극적 의미의 인권옹호사업인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사업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만이 피해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사업 이외

<표 6>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권 옹호’ 관련 사업 비교

분 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옹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	1 (자*)	-	-	-	-	-	-	-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강화	-	1	-	2	4	1	-	1	1
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보호 관련 적법 절차 준수	-	-	-	-	-	-	-	-	-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지침	-	1	-	-	-	-	-	-	-
	보호시설의 물적, 인적 인프라 개선	-	-	-	-	-	-	-	-	-
선진적 난민 안정,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구축	-	-	-	-	-	-	-	-	-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	-	-	-	-	-	-	-
합 계		-	1 1 (자)	-	2	4	1	-	1	1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표 7>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빈도 분석

분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교육 사업	16	6	6	11	10	3	4	3	4	47
국제 활동 사업	-	-	-	-	-	-	-	-	-	-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	-	-	-	-	-	-	-	-	-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39	9	8	31	26	3	12	6	8	103
합계	55	15	14	42	36	6	16	9	12	150

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방지와 고층상당 등 애로사항 해결지침 등 타 지역에 비해서 다양하게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국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내용을 분석 한 결과<표 2>, 이들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사업,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다섯 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빈도 분석(frequency-analysis)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교육사업을 분류하지 않고, 동일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적게는 3개 사업부터 많게는 1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10개 이상의 홍보 및 교육사업이 많았으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는 3~4개 사업으로 적었다.

둘째,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와는 다르게 국제활동사업이나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다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비교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사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사업수가 거의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사업이 홍보 및 교육사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 가족정책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집중되는 서비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모두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계획되는 영역의 사업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활동사업과 이민자 고유문화 유지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정책의 특성이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캐나다와 호주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쌍방향의 문화 이해가 전제된 다문화인식개선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학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적응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즉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외국인정책위원회, 2009) 중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의 도입 초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지역사회 환경이 고려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서비스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의 대상 인구 수 및 욕구 등을 조사 한 후, 다문화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대상자로 다문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필수 사업 및 선택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의 중

점분야를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에서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은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경북, 전남 지역의 경우 35개부터 56개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남, 전북, 충남, 충북의 경우 6개부터 12개 사업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족복지서비스의 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 경북, 전남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양과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 이민자의 초기 적응기간이 지난 후 공통적으로 이들은 경제적 문제 해결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취업 설계와 취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 교육 및 취·창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 중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녀를 위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의 경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계획된 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의 경우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청 지원 사업에

서 지원하고 있기에 다문화 가족서비스에서 제외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교에서 학습 및 적응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처별 협력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에서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외국인 인권 옹호사업’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있는 사업 중에서 매우 저조한 1-4개 사업만 계획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사업의 경우 경기, 충북 1개 사업, 경북, 제주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이 분야에 1개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권 옹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4개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소극적 의미의 인권옹호사업인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사업으로 나타났다. 결국,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외국인 인권 옹호’ 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외국인 인권 옹호’ 사업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09.12)」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과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 비전 및 목적, 그리고 사업영역이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있어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이민자 고유문화 유지사업, 국제 협력 사업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도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이민자 고유문화 유지사업, 국제 협력 사업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가족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다문화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구성 등의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최초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자료만을 참고하여, 실제로 실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변미희(2009). 다문화 가족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 변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23~136.
- 2) 강기정, 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 3)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4)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문제.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 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61~88.
  - 5) 법무부(2008). 결혼이민자 현황. 법무부.
  - 6) 서재호(2008). 지방자치단체 실시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2), 191-215.
  - 7)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200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1-20.
  - 8)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06). 서울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복지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 9)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10) 유정석(2003). 캐나다-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11), 12-26.
  - 11) 이선주, 민무숙, 신현옥, 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2) 이해경(2007).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 모형. 다문화가족연구.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 13) 이해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 147-166.
  - 14) 장명선(2009).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5)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 학지사.
  - 16) 충남여성정책개발원·충남여성포럼(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지역사회의 과제. 제12회 여성주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8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17) 통계청(2007-2008). 인구동태(혼인). www.nso.go.kr.
  - 18)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7).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서울 : 양서원.
  - 19)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0) Goldberg, David(ed). 1994.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New York : Blackwell.
  - 21) Wliiett, Cynthia(ed.). 1998. Theoriz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New York : Blackwell.
- 투 고 일 : 2010년 4월 15일
  - 심 사 일 : 2010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5일